

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8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2. 제정이유

파주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구현과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,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, 위촉·해촉,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 및 제10조)
- 나. 위원장의 직무, 회의운영 및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 및 제9조)
- 다. 참석수당, 위원회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, 제12조, 제13조 및 제14조)

4. 제정조례안 : 별첨

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의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8일까지(20일간)
- 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- 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소통홍보관 핵심현안TF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소통홍보관실(우 10932)

○ 전화 : 031-820-7784 / 팩스 031-940-4139 / 이메일 mcr0724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